



벤처창업동아리 운영규정

제정일자	1999. 6. 9
개정일자	2012. 2. 1
페이지	1-10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청대학교(이하 본 대학교이라 한다)의 학생단체 중 기술집약형 벤처창업을 목적으로 하는 동아리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1)

제 2 장 벤처창업동아리의 등록 및 운영

제2조(등록요건) 벤처창업동아리(이하 “동아리”라 한다)로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설립목적에 찬동하는 10명 이상의 회원이 있어야 한다. 단, 회사형태의 조직 및 인원구성을 원칙으로 한다.
2. 설립목적이 기존 동아리와 중복되지 않는 고유한 특성이 있어야 한다.
3. 지도교수를 선정하고 승낙서를 받아야 한다.

제3조(신규등록) 신규로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규등록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회원명단 (별지 제2호 서식)
3. 삭제
4. 회칙
5. 지도교수 승낙서 (별지 제3호 서식)
6. 연간활동계획(별지 제4호 서식)
7. 동아리 아이템 개발계획서 (별지 제5호 서식)

제4조(재등록) 동아리는 매년 재등록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회원명단(별지 제2호 서식)
3. 삭제
4. 회칙
5. 지도교수 승낙서(별지 제3호 서식)
6. 연간활동계획(별지 제4호 서식)
7. 동아리 아이템 개발계획서 (별지 제5호 서식)
8. 전년도 활동실적(별지 제6호 서식)

제5조(승인) 신규 및 재등록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9. 2. 1)

제6조(지도교수) 각 동아리의 지도교수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 동아리에 위촉된 지도교수는 소속동아리의 활동에 책임감을 가지고 지도하여야 한다.
2. 지도교수에게는 소정의 지도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재정) ① 동아리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 수익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각 동아리의 활동정도에 따라 소정의 보조금 및 기타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활동) ① 각 동아리는 학내외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② 동아리 대표는 행사 7일전에 행사계획서를 지도교수를 경유하여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유인물 및 간행물의 발간 시 지도교수를 경유,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등록취소)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아리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설립목적과 다르다고 판단될 경우
2. 행사 실적이 없거나 부진한 경우

제 3 장 벤처창업동아리 연합회

제10조(구성) ① 각 동아리의 회장 중 대표를 선발하여 연합회 회장으로 한다.

- ② 동아리 연합회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부회장 및 섭외, 총무 등을 둘 수 있다.
- ③ 연합회에는 각 동아리로 구성된 연구개발팀과 교직원, 학생, 산업체인사로 구성된 마케팅 및 산학연계개발추진팀을 둘 수 있다.

제11조(연합회지도교수) ① 연합회는 각 동아리 지도교수 중 적임자를 연합회 지도교수로 위촉한다.

- ② 연합회 지도교수는 동아리 연합회의 진로지도 및 각 동아리와 산업체를 연계하여 동아리의 목적 달성을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위원회) ① 동아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으로 하고, 운영위원회 위원은 연합회 지도교수 및 창업보육센터소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산학협력단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개정 2009. 2. 1)
-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의결할 수 있다.

1. 동아리의 등록 및 해산(단, 동아리 연간 평가표에 의거)
2. 지도교수의 지도연구비 및 동아리 보조지원사항
3. 기타 동아리 운영에 관한 사항
- ④ 당연직이 아닌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6월 9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4호 서식)

연간 활동 계획

동아리명 :

구분	항목	세부계획	사업비	비고
창업활동	창업아이템개발 연구조사 경연대회 참가 등			
대외활동	전시회, 박람회 참가계획, 학내발표회, 창업관련행사 참가 등			
창업교육	창업관련 교육참가, 창업현장견학, 창업스쿨 참가, 자체 세미나 등			
지도교수 지도방안				

(별지 제5호 서식)

동아리 이이템개발 계획서

개발과제명			
주요개발 내용			
사업비		원	
사업기간		200 . . . ~ 200 . . .	
동아리 현황	동아리명		
	대표자	대표 연락처	자택 : H.P : E-mail :
	지도교수	회원수	

붙 임 : 동아리 아이템 개발비 사용 계획서 1부.

년 월 일

(동아리명) :

(대 표) : (인)

(지도교수) : (인)

충청대학교산학협력단장 귀하

동아리 아이템 개발비 사용 계획서

(별지 제6호 서식)

전년도 활동 실적서

1. 동아리 과제 현황

동아리명		지원금액	원
개발과제명			

2. 항목별 사업비 집행 계획

(단위 : 원)

구 분	품목 및 사양	산출내역	금액
기자재구입		예) (단가)×(수량)	
견본, 시약, 재료구입비			
기술정보 활동비			
운영비 (10% 이내)			
계			

상기와 같이 동아리 과제개발비에 대한 사용계획을 제출합니다.

200

동아리 대 표 (인)

동아리 지도교수 (인)

동아리명 :

<주요사업내용 기재>